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6. 12. 7.
제255회 정례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11월 13일

○ 회부일자 : 2006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6. 12. 1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가. 제안 이유

○ 민선4기의 도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기구 신설과 전담기능
강화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 정원관리기별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정원의 총수 : 2,621명 ⇒ 2,629명 (증8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65명 ⇒ 1,471명 (증6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5명 ⇒ 67명 (증2명)
-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의 정원 : 변동없음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의 총수 : 2,621명 ⇒ 2,629명 (증8명)

- 본 청 : 972명 ⇒ 980명 (증8명)
- 의회사무처 : 65명 ⇒ 67명 (증2명)
- 직속 기관 : 1,291명 ⇒ 1,296명 (증5명)
- 사업소 : 293명 ⇒ 286명 (감7명)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과 같이 제출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2,621명에서 2,629명으로 8명 증원하였음.
- 본 정원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원관리기관별로는 도 본청 9명·직속 기관 5명·의회사무처는 1명이 증원되었고 사업소는 7명이 감원되었으며, 직급별로는 3급 1명·4급 3명·5급 4명이 증원되었음.
- 증원 증원사유는 조직개편에서 1본부(3급)·3과(4급)·4팀(5급)이 신설 신설됨에 따라 증원하는 것으로 5급이상은 현정원에서 조정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바 정원 8명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기능이관 등의 사유로 이해가 되나 구체적인 정원조정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수정 이유

○ 도의회는 의정활동 보좌를 전문위원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으나 업무량 및 의원정수 증가 등으로 현재 보좌인력 3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좌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이나 충청북도의 현원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행정 6급 1명을 충원함.

수정 주요내용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원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집행기관의 정원 : 1,472명 ⇒ 1,47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6명 ⇒ 67명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12. 1

제안자 : 김환동의원 외

□ 수정 이유

- 도의회는 의정활동 보좌를 전문위원실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으나 업무량 및 의원정수 증가 등으로 현재 보좌인력 3명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보좌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이나 충청북도의 현원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행정 6급 1명을 충원함.

□ 수정 주요내용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명 감원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 집행기관의 정원 : 1,472명 ⇒ 1,47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6명 ⇒ 67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및 동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471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7명

[별표 1] 중 총정원란의 본청 981을 980으로 의회사무처 66을 67로 하고, 일반직 소계란의 본청 815를 814로 의회사무처 40을 41로 하고, 일반직 6급란의 본청 275를 274로 의회사무처 13을 14로 한다.

수정안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2,629명으로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집행기관의 정원 : 1,472명</u> 2. (생략) 3. (생략) 4. <u>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6명</u> 	<p>제2조(정원의 총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집행기관의 정원 : 1,471명</u>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u>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7명</u>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629명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471명
2.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1,047명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4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67명

제3조(직급별 정원)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한시정원) 도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의 규정)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직급정원) 본청의 정원 4급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사업소의 정원 3급 1명, 4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직 종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 업 소
총정원			2,628	981	67	1,296	286
정무직(도지사)			1	1			
일반직	소계		1,076	814	41	67	154
	2-3급		1		1		
	3급		9	7		1	1
	3-4급		1	1			
	4급		60	40	7	5	8
	5급		213	171	7	14	21
	6급		356	274	14	19	50
	7급		377	280	12	24	61
	8급		57	40		4	13
일·반·정	9급		1	1			
	소계		4	3	1		
	5급		2	1	1		
	6급		1	1			
별정직	7급		1	1			
	소계		18	10	2	5	1
	1급		1	1			
	5급		2	2			
	6급		10	3	1	5	1
	7급		2	2			
	8급		2	1	1		
연구직	9급		1	1			
	소계		140	1		110	29
	연구관		21			18	3
지도직	연구사		119	1		92	26
	소계		25			25	
	지도관		6			6	
소방직	지도사		19			19	
	소계		1,047	59		988	
	소방정		10	2		8	
	소방령		29	10		19	
	소방경		58	4		54	
	소방위		67	6		61	
	소방장		142	11		131	
	소방교		324	24		300	
교원	소방사		417	2		415	
	소계		44			44	
	학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2			32	
기능직	조교		11			11	
	소계		274	92	23	57	102
	6급		9	6	1	1	1
	7급		30	10	4	4	12
	8급		54	17	1	4	32
	9급		87	23	7	30	27
	10급		94	36	10	18	30

[별표 2]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30	일반직 : 4급1, 5급6, 6급9, 7급7, 8급6 기능직 : 10급1		
본 청	4	일반직 : 5급2, 6급1, 7급1	2007. 6. 30.	혁신지원 및 고객만족업무
	2	일반직 : 6급1, 7급1	2007. 12. 31.	사업별예산업무
	4	일반직 : 5급1, 6급2, 7급1	2008. 12. 31	역사규명업무
	1	일반직 : 6급1	2008. 12. 31.	과거사 업무
	3	일반직 : 7급1, 8급1 기능직 : 10급1	2008. 12. 31.	복식부기업무
	1	일반직 : 7급1	2008. 12. 31.	동학관련업무
	15	일반직 : 4급1, 5급3, 6급4, 7급2, 8급5	2008. 10. 30.	혁신·기업도시 관련업무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

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⑤ (생략)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의 총수 : 2,621명 ⇒ 2,629명(증8명)
 - 3급1, 4급3, 5급4

3. 비용소요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총 계	660,122	
○ 인건비	471,114	
- 기본급	262,238	※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 적용 - 3급(1명) : 20호봉 기준 - 4급(3명) : 20호봉 기준 - 5급(4명) : 18호봉 기준
- 수 당	81,294	
- 정액급식비	14,040	
- 교통보조비	16,560	
- 명절휴가비	30,098	
- 가계지원비	50,164	
- 연가보상비	16,720	
- 기타직보수		
- 일용인부임		
○ 물건비	102,00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0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1,000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36,600	
- 직급보조비	38,40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 이전경비	87,008	
- 성과상여금	10,032	
- 연금부담금	66,458	
- 국민건강보험금	10,518	
- 연금지급금	-	